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성 명 서

사무총장 우인식 변호사(010-5174-7736)
대 변 인 양윤숙 변호사(010-7445-0729)
대 변 인 이동찬 변호사(010-8759-0252)
사무처 02-599-4434 / www.hanbyun.or.kr
이메일 hanbyun@hanbyun.or.kr

반(反)헌법적 독소조항 포함하고 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제·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 한변(韓辯)은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제·개정안, 소위 공정경제 3법'에 대하여,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反)헌법적 독소조항들이 대폭 해소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는 개인과 기업의 창의적인 경제활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기업 경영 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주주권의 행사를 옥죄는 제도들은 헌법과 배치된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 개정안에 포함된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감사위원 분리선임제와 다중대표소송제는 헌법의 재산권 보장을 심각하게 위배할 소지가 크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주주의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막기 위한 공정한 제도의 수립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대한민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념 편향의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는 의도했던 결과는 커녕 국내 기업만 옥죄는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다. 이미 데이터에 기초한 객관적 분석 없이 '대기업 견제, 골목 상권 보호'등의 명목하에 급조된 규제들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만 반사이익을 누리는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한변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감독법 제·개정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각 법률안의 반(反)헌법적 독소조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일선에서 기업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이 기업답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 9. 2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